직을 대행하도록 위임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총무와 권○○ 부회장이 별도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불법을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비대위와 고소고발 등의 문제

3월 28일 정기총회에서 회장 이하 전임원이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니 비상대책위원회 12인은 이사회를 대신하면서 비상결의권을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입니다. 따라서 이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드시 공개되고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하는 막중한 회의기능을 갖습니다. 4월 3일자에 이 비대위 회의에서 중요한 두가지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하나는 종재 5억원의 횡류 책임을 물어 본인을 포함해 권병헌 부회장과 권영호 사무장 등 3인을 형사고발키로 한 것이고, 하나는 앞으로 창수공종회장에 피선되는 자의 자격요건으로서 부동산 시가 5억원 이상 소유자로 함을 내규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 2인이 본인등 3인을 형사고발하였으나 채권확보와 손실종재의 변제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식적인 본말의 전도로서 삼척동자가 웃을 일입니다. 본인은 비대위에서 먼저 본인등 3인 외에 연대책임을 물어 감사 2인과 총무 1인까지 모두 6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인의 재산에서 5억원의 손실을 환수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권확보와 손실 환수조치는 도외시하고 형사고발만 해 놓았으니 이는 사람을 죽이는 데만 목적이 있고 종재의 환수에는 관심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형사고발은 횡령과 배임의 공소시효가 7년이나 될 것이므로 향배를 보아가며 천천히 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내규 부분은 총무가 원본회의록을 분실하고 다시 만든 회의록에 그 사실을 누락시키고는 그런 결의를 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하니까 비대위원들이 모두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는 소문입니다. 이는 근자에 우리나라 각성씨의 종재가 있는 문중에서 이른바 종회장의 '먹튀'를 막기 위해 속속 도입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 조항으로서 정관에 명시하는 문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4. 25. 임시총회와 야합의 의혹

4월 25일 13시에 성석동 재사에서 연 임시총회는 일간신문 등에까지 공고한 3개 안건 중 제1호의안이 '선거직 임원 선출'이었던 바 이 안건처리가 불법과 야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공고 및 상정된 안건대로 선거직 임원, 즉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를 구성치 아니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이 무기한 연장되게 하였으며, 감사는 개선하거나 재신임하는 절차도 밟지 않고 연임시켰으며, 회장은 회칙상 1인인데 3인을 공동회장으로 선출하는 불법과 변칙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특히나 3인의 공동회장을 선출하면서 전종원비 31%의 송화공계에서 1인, 전종원비 20%의 송파공계는 제외, 전종원비 30%의 초루공계에서 1인, 전종원비 15%의 계방季房 수은공계에서 1인으로 하여 자손비율도 5% 이상이 많고 건제상 순위가 몇 단계 앞서는 송파공계를 제치고 말째의 수은공계가 횡점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야합인 것입니다.

다섯째, 회의록의 임의조작 문제

각급 회의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의 자가 작성하고 의장이 서명하며 다음차 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실정법리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 3월 28일의 정기총회 등에서는 의장이 제외되고 총무가 지명한 자의 서명과 총무의 자의적 작성으로 조작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3월 28일 정기총회의 소집권자이고 의장이었는데 이날의 회의록에 본인이 서명한 일이 없습니다.

이상에 열거하여 적시한 불법과 과실을 완전히 되돌려 바로잡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임을 본인도 압니다. 그러나 현금의 창수공종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권능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바로잡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상의 불법 및 일탈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권○○ 전부회장과 권○○ 총무를 모든 창수공종회의 공직으로부터 해임할 것.

2. 3. 28.자 정기총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4. 25.자 임시총회의 부존재를 인정하여 4. 25. 부존재 임시총회에서 선출한 3인공동회장의 적법성 부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들 3인 공동회장을 재선출하되 수은공계 1인을 배제하고 송파공계 1인으로 교체하여 줄 것.

3. 종재의 횡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본인을 포함한 3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재고하여 실효성 없이 사람만 단죄하는 우를 버리고 실제로 민사적 연대책임을 통해 손실을 합리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이상의 세 가지 요구조건에 대해 성의 있는 회신을 내용증명의 공개가능 서신으로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을 거부하시거나 본인의 요구사항을 무시하실 경우 이 서신은 본인의 정기총회 존재 및 임시총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위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장에 자료로 첨부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權炳逸>

5면에서 계속

었다. 5남2녀를 두었는데 차남 권이權怡는 대호군, 5남 권수權需는 문과 집현전교리集賢殿校理로서 단종 손위시 피화하였다.

창화공의 현손대에 가서 그 종손인 현성군 권정주權定柱의 아들 권희달權希達은 조선 태조를 도와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이 되고 정안대군靖安大君 이방원李芳遠의 핵심참모로서 제2차 왕자의난에 수공을 세워 대장군이 되며 태종이 즉위해서는 대호군이 된다. 성품이 과격하여 태상왕의 노여움으로 유배도 되고 공신 조영무趙英茂와 다투어 파직되기도 하며 상호군·총제摠制·별순총제·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중군총제·우군총제 등을 지내고 고부사告訃使 등이 되어 명나라에 두 차례 사행도 한다. 충청수군절도사·우군 도총제·사금절제사司禁節制使·중추원부사副使·지중추원사가 되고 세종 16년에 졸하여 위려威戾의 시호를 받았다. 정부인은 덕수이씨德水李氏이고 묘소는 양주 회천 봉양동 내촌의 선고묘하에 있다. 위려공 권희달의 장남 권인權B은 사정司正이고 권인의 장남 계충繼忠은 대호군이나 후사가 없고 차남 계효繼孝도 상호군이나 후사가 없다. 3남 계지繼智가 현령·상호군으로서 회천 세거지에서 가계를 잇는데 그 아들 권우직權友直이 법성포만호法聖浦萬戶로서 왜변에 순국하고 그 아들 권빈權彬이 무과 가선대부로 경상병사·충청병사·경상수사水使·경원부사慶源府使를 지내고 그 장자 권이형權以衡이 광량진첨사廣梁津僉使로서 순국하여 이조참의로 추증된다. 그 방계 후손이 많이 절손되어 상호군공의 종계는 극히 번창하지 못했다. 위려공 권희달의 차남 권축權軸은 진잠현감을 지내고 충청도 공주로 가 복거했는데 그 손자의 대에 가서 후사가 끊겼다.

현성군 권정주의 차남 권희수權希遂는 상호군인데 태종과 잠저시부터의 동갑계원 21인 중 하나였다. 그 맏아들 권효權曉는 자가 요일堯日, 호가 만은晩隱인데 좌익원종공신으로서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영의정으로 명나라에 갈 때 수행하여 중화인에게 학문으로 추증되었다. 그러나 수양대군이 단종을 손위시키고 등극하자 그 지우知遇를 버리고 원주로 둔찬했다가 다시 순창淳昌으로 더 멀리 내려가 신숙주申叔舟의 아우 신말주申末舟와 더불어 수절하였다. 부인 순창설씨淳昌薛氏는 판서 인仁의 딸이고 묘소는 순창군 구림면 성곡리 학현鶴峴에 있다. 이후로 순창 일대에 그 후손이 퍼져 세거하게 되었다. 만은공 권효의 아들 권이평權以平은 박천군수博川郡守이고 그 아들 권세형權世衡은 승문원박사를 거쳐 강계부사江界府使로 나갔다가 연산군의 혼조를 만나 기관하고 고향 순창에 은거했다.

창화공의 둘째손자 찬성사 권현權鉉의 계통은 그 아들 권경權京이 상호군이고 그 아들 권효근權孝勤이 군수이며 군수 권효근의 차남 권중린權仲麟이 세조조에 문과를 하여 예빈시부정·광주목사·춘천부사를 거쳐 예조참의가 되고 대사간에 이르나 후사가 끊어진다. 찬성사 권현의 4대종손 권선權選은 감역監役인데 그 후손의 한 줄기가 충북 음성과 괴산 일대에 세거한다.

창화공의 다섯째손자 규헌공 권규權葵의 장자 사간공 권훈權壎의 계통은 그 증손 권민權B이 포천현감과 풍기군수를 지내는데 그 증손 권우權遇가 무과를 하여 선천군수와 부사 등을 지내다가 광해군의 난정에 현감을 지냈던 전라도 장흥으로 낙향하여 시거함에 따라 후손이 일대에 세거하게 되었다.

규헌공 권주의 차남 문과 주서注書 권증權增계는 황해도 문화文化와 신천의 구월산 일대에 세거하게 되었다.

규헌공 권규의 3남 회정공 권보權B의 장남 권훤權煊은 호가 매은梅隱이고 사재감직장司宰監直長인데 3남 정순공靖順公 찬B이 귀히 됨에 따라 좌찬성에 추증되고 현복군玄福君이 되었다. 그 묘소가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봉항산蜂項山에 있음에 따라 그 후손이 진위와 수원의 갈담葛潭 일대에 세거하게 되었다. 그 3남 권찬權B은 생원시를 하여 의서습독관醫書習讀官으로 출사하여 감찰·좌랑·대학교수 등을 거쳐 익대공신翊戴功臣이 되고 가선대부 현복군玄福君에 이르러 자헌대부 공조판서·약방제조藥房提調 등을 지냈으며 사후에 정순靖順의 시호를 받았다.

회정공 권보의 차남 권휴權烋는 여묘廬墓를 한 효자로서 형조참판에 증직되었는데 그 장남 진사 권추權推, 차남 과천현감 권발權拔, 3남 사직 권탁權擢이 모두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일대에 세거하여 후손이 많이 번창하였다.

창화공의 차남 원정공 권적權適의 셋째손자 권정權B은 호군인데 그 아들이 귀히 됨에 따라 자헌대부 병조판서로 추증되었다. 부인 남원양씨南原梁氏는 판서 일우一雨의 딸이다. 호군공 권정의 장자 권개權愷는 세종 29년, 1447년에 친시문과를 하여 세조초에 좌익공신佐翼功臣이 되고 선공감정·요동선위사遼東宣慰使·우사간·좌사간대부·지병조사·병조참의 등을 거쳐 황해·강원관찰사·전라관찰사·경기감사·중추원부사副使로서 복천군福川君이 되었는데 세조 14년에 졸하여 문평文平의 시호를 받았다. 그러나 뒤에 아들 길창군吉昌君 맹희孟禧가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의 무옥에 연루되어 봉사奉祀가 끊기는 화를 당하여 부인의 성씨와 묘소 등의 기록도 실전되었다. 문평공 권개의 장남 권맹희權孟禧는 세조말에 문과를 하여 집의·우부승지·좌부승지·도승지·선위사를 거쳐 여진 건주위를 정벌한 군공으로 함길남도절도사가 되고 길창군吉昌君에 봉해졌다. 유도장留都將·경상감사·경기감사가 되었다가 성종 1년, 1470년 1월에 일어난 귀성군 이준의 옥사에 그 척친으로 연좌되어 혹형에 희생된다. 그 아우 권중희權仲禧는 주부主簿로서 백씨의 옥사에 연루되어 피화하나 그 아들 권관權琯과 권선權瑄 형제가 살아남아 그 후손이 천안·아산과 남양의 송치리 및 보은의 회북면에 세거한다.

호군공 권정의 차남 권각權恪은 일명이 제悌이고 세종 때 생원, 문종 때 문과를 하여 정언·지평·정랑·경차관敬差官을 거쳐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로 다녀오고 중국에 성절사聖節使로 다녀와서는 예종 때 호조참의를 거쳐 전라도관찰사가 되었다. 그러나 성종 1년, 1470년에 조카 길창군 맹희가 귀성군 이준의 옥사에 연루됨에 따라 연좌되어 평택의 진위에 부처되었다. 정부인은 초계변씨草溪卞氏이고 묘소는 안성시 양성陽城 원당의 시묘동侍墓洞에 있다. 그 아들 권거權B는 생원이고 부인 양성이씨陽城李氏 호군 승번承蕃의 딸과 함께 묘소가 양성 시묘동에 있다. 생원 권거의 4남 가운데 3남 권수정權守正만이 세거지 양성에서 후사를 이어 그 자손이 퍼졌다. 권수정의 손자 권사공權士恭이 금고에서 풀려 선조 34년, 1601년에 진사를 하고 5년 뒤 문과에 급제하여 좌랑·정랑이 되었는데 광해군의 난정에 좌천되었다가 인목대비를 폐출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다 하여 평안도 창성昌城에 유배되고 경북 흥해興海로 이배되었다가 그곳에서 병졸했다. 인조반정 후 임금이 치제하고 예조참의로 추증하였다. 숙부인 한양조씨漢陽趙氏는 문과 부사 응문應文의 딸이고 묘소는 양성의 원당 시묘동 선산에 있다.